

公正去來法에 의한 카르텔規制 內容

〈經濟企劃院 公正去來室〉

I. 共同行爲內容

1. 共同行爲의 定義

- 共同行爲란 ① 事業者가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② 契約·協定決議 其他 다른 方法을 통하여 ③ 價格의 決定·維持 또는 變更行爲 등 法第11條 第1項 各號의 行爲를 하는 것을 말함(法第11條 第1項)

가. 主 體

- 共同行爲의 主體는 2以上の 事業者임
- 事業者
 - 製造業, 建設業, 都·小賣業, 運輸倉庫業을 營爲하는者(法第2條 第1項)
 - 飲食 및 宿泊業, 通信業,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 金融·保險業, 不動產 및 事業서비스業,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을 營爲하는者(令第2條 第1項)
 - * 各事業의 分類는 韓國標準產業 分類에 따름(令第2條 第2項)
- 事業
 - 어떤 經濟的 利益의 供給에 대하여 그것에 對應하는 經濟的 利益의 反對給付를 받는 行爲를 反復·繼續하여 行하는 것.
 - 事業에 該當되지 않는 行爲

例 { 1회만의 行爲
一方的인 經濟的 利益의 供給

- 事業을 營爲한다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事業을 行하는 것을 意味하는데, 이 경우 事業者의 主事業은 물론이며 主事業이 아닌 附隨事業이 營利를 目的으로 하면 그 附隨事業은 對象事業이 됨.
-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宗教, 學術, 研究, 調查, 社會事業을 行하는 者는 事業者가 아님.

나. 意 思

- 共同行爲에서 共同行爲의 實現을 위한 共同의 意思가 必要함.
 - 共同의 意思는 完全한 合意는 勿論 合意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意思의 連結이 있으면 足함.
- 共同의 意思의 表現方法은 “契約, 協定, 決議 其他 어떠한 方法”이며 其他 어떠한 方法이던 合意, 諒解 등 積極的인 共同의 意思는 勿論 暗默의 諒解 등 消極的인 共同의 意思도 包含함.
 - 明示的 共同行爲
 - 決議, 協定, 契約 등 明示的 意思의 存在
 - 合意, 諒解 등 積極的인 意思의 存在
 - 默示的 共同行爲

- 暗黙의 諒解등 消極的인 意思
- 行爲의 結果가 外形上 一致할 때는 共同의 意思가 存在하는 것으로 推定(法第11條 第3項)

다. 行爲

- 共同行爲는 事業者가 다른 事業者와 다음의 行爲를 하는 것을 말함.

(1) 價格을 決定·維持 또는 變更하는 行爲

- 價格은 本來 事業者의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통해서 形成해야하는 것인데 事業者間에 또는 事業者團體가 關與하여 價格을 決定, 維持하고 變更하는 것은 公正하고 自由로운 市場狀態에 影響을 미치는 것임.

- 共同行爲에 該當되는 行爲例

- 最低販賣價格의 設定 및 價格引上幅을 設定
- 共通的인 價格算定方式의 設定으로 價格을 決定
- 標準價格, 基準價格, 目標價格을 設定
- 割引限度額 등을 설정
- 價格을 團體交渉에 의해 決定
- 廉賣業者排除 및 廉價品の 還買
- 將來의 價格에 대한 情報活動

(2) 商品의 販賣條件 또는 用役의 提供條件이나 그 代金 또는 代價의 支給條件을 定하는 行爲

- 商品의 販賣條件이나 用役의 提供條件은 事業者의 固有한 事業活動分野인데 이에 대해 制限을 가하는 것은 自由로운 市場競爭 狀態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이며 販賣代金이나 代價의 支給條件은 價格을 構成하는 要素로서 이러한 代金 또는 代價의 支給條件을 定하는 것은 市場價格에 대한 制限이 되어 自由롭고 公正한 市場狀態에 影響을 미치는 것임.

- 共同行爲에 該當되는 行爲例

- 共通的인 代金支給方法의 設定
- 再販條件의 設定
- 共通的인 商品引渡條件의 設定

(3) 商品의 生産, 出庫 또는 販賣의 制限이나 用役의 提供을 制限하는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生産·販賣등의 數量을 制限하는 것은 市場의 需給關係에 影響을 주고

價格維持 및 引上의 效果를 가져오게 되며, 事業者의 經營合理化에 의한 費用節減效果를 制約하고 事業者의 競爭手段을 制限하게 되어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狀態에 影響을 끼치게 됨. (用役의 提供을 制限하는 行爲도 마찬가 지임)

- 共同行爲에 該當되는 行爲例

- 生産·販賣등의 數量을 共同으로 決定하는 것
- 原材料의 購入制限등에 의한 數量制限
- 數量限度를 示唆하는 基準設定에 의한 數量 調節
- 需給調整을 目的으로 하는 作爲的인 需要 豫測 및 短期需要豫測에 의한 供給計劃 交換

(4) 去來地域 또는 去來相對方을 制限하는 行爲

- 事業者가 共同으로 去來相對方의 制限, 去來地域의 制限, 受注의 配分, 受注豫定者의 決定을 行하는등 去來地域 및 去來相對方을 制限하는 行爲는 事業者의 販賣競爭을 制限하고 需要者의 選擇權을 侵害함으로써 市場의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狀態에 影響을 미치게 되며 結果적으로 價格 및 需給狀況에 影響을 미치게 됨.

- 共同行爲에 該當되는 行爲例

- 去來相對方의 制限
- 去來地域의 制限
- 受注의 配分, 受注豫定者의 決定
- 入札등에의 參加制限
- 블랙·리스트(Black List)등의 作成

(5) 生産 또는 用役의 提供을 爲한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을 制限하는 行爲

-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 등에 관한 制限이 事業者의 生産活動 및 事業活動을 制約함으로써 事業者의 競爭手段을 制限할 때 結果적으로 市場의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阻害하게 됨.

그러나 設備의 新設 또는 增設이나 裝備의 導入을 制限하는 事項이 公害의 防止나 危險의 防止 등 公益의 基準을 設定하는 것일때

는 그러한 目的의 範圍內에서 制限이 認定될 수 있음.

- 共同行爲에 該當되는 行爲例
 - 設備의 新·增設의 制限, 共同廢棄
 - 設備投資를 制限하기 위한 情報活動
- (6) 商品의 生産 또는 販賣時에 그 商品의 種類 또는 規格을 制限하는 行爲
 - 商品의 規格, 種類를 制限하는 行爲는 製品 競爭을 制限함
 - 市場에서의 競爭에 影響을 미쳐 需要者의 選擇權을 制限
 - 企業競爭力強化와 消費者保護側面에서 볼 때 製品의 多樣化와 新製品開發에 影響
 - 다만, 生産能率의 向上, 流通의 合理化, 部品の 互換性增大, 粗惡品排除등을 위한 標準化事業活動으로서 需要者의 利益을 害하지 않을 때는 受當性이 認定될 수 있음
- 共同行爲에 該當되는 行爲例
 - 規格制限(價格制限의 補完行爲, 競爭手段 制限, 需要者 利益沮害)
- (7) 營業의 主要部門을 共同으로 遂行하거나 管理하기 위한 會社를 設立하는 行爲
- (8) 다른 事業者의 事業內容 또는 活動을 制限하는 行爲
 - * 어떤 行爲가 直接 위 類型에 該當하지 않더라도 위 類型의 行爲에 結果적으로 影響을 미치거나 위 類型의 行爲實現을 目的으로 하는 경우에는 共同行爲로 看做함(改正追加)

2. 不當한 共同行爲의 成立

- 共同行爲 중에서 “一定한 去來分野의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하는 行爲”는 不當한 共同行爲임
- 不當한 共同行爲는 所定節次·要求에 따라 經濟企劃院長官의 認可를 받지 않으면 行할 수 없으며 認可받지 않고 不當한 共同行爲의 遂行을 約定하는 경우 該當 契約등은 事業者間에 있어서 無效가 됨.

가. 一定한 去來分野

- 一定한 去來分野는 去來의 客體別로 競爭關係가 成立되는지 與否에 따라 判斷하고 그 範

圍의 制限이 必要한 경우는 去來段階別 또는 去來地域別로 區分하여 判斷함.

- 去來客體別 競爭關係의 成立은 同種 또는 類似한 商品 또는 用役인지의 與否에 따르며 同種 또는 類似한 商品 또는 用役이란
 - 一般的인 商品分類에서 同種으로 分類되거나
 - 當該 商品의 機能 및 效用의 類似性이 있거나
 - 當該 商品의 生産工程의 類似性이 있거나
 - 去來相對方의 特性上 同種 또는 類似한 것으로 通常 認定되는 것임.
- 去來段階別 競爭關係의 成立은 商品의 去來가 特定去來段階에만 關聯되는 경우에는 生産, 都賣, 小賣 또는 特殊한 段階로 區分함.
 - 當該 事業者의 活動이 生産業, 都賣業, 小賣業 어디에 屬하는가의 判斷은 社會通念에 따라서 當該事業者의 通常의 事業活動이 基準이 됨.
- 去來地域別 競爭關係의 成立은 需要層의 地域範圍, 競爭制限行爲 參加者의 地域範圍, 對象商品의 移動性등을 考慮하여 地域範圍를 區分함.
 - 一部 極히 限定된 地域 및 通常事業活動의 範圍를 벗어난 地域에서는 競爭의 實質的 制限이 成立되지 않음.

나. 競爭의 實質的 制度

- 競爭狀態의 實現은 競爭關係에 있는 事業者間에 있어서 個個의 事業者들이 서로 他事業者를 배척하고 去來相對方과 去來하려는 競爭機能이 確保되고 그것이 發揮되고 있는 狀態를 意味함.
- 競爭의 實質的 制限이란 一定한 去來分野의 競爭狀態가 減少하여서 特定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그 意思로 어느 程度 自由로 이 價格, 數量, 品質 및 기타 條件을 左右함으로써 市場을 支配할 수 있는 狀態를 의미함.
- 一定한 去來分野의 市場에 實質的 市場支配力 形成은 當該業種의 生産構造, 市場構造, 競爭狀態 등을 考慮하여 個別的으로 判別함.

- 市場支配力を 形成하지 못하는 少數의 事業者의 行爲는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한다고 볼 수 없음.

3. 法的用이 除外되는 共同行爲

가. 法令에 따른 正當한 行爲

-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事業者 또는 事業者 團體가 法律 또는 그 法律에 의한 命令에 따라 行하는 正當行爲”에 대해서는 法適用이 제외되므로 共同行爲 違反事件이 成立되지 않음(法第47條)
- 特別한 法律에 競爭制限에 관한 明文 規定이 있어야 함.
- 根據規定이 包括적이고 曖昧한 경우에는 特別法의 目的에 따라 法令에 따른 正當한 行爲 與否를 判斷하며 競爭制限行爲가 必要不可缺한 事由가 立證되어야 함.
- 根據規定이 包括적이고 曖昧하며 競爭制限行爲가 特別法의 目的에 비추어 必要不可缺하지 않을 경우는 適用除外가 되지 않음.

나. 無體財產權의 行使行爲

- “著作權法, 特許法, 實用新案法, 意匠法 또는 商標法에 의한 權利의 行使라고 認定되는 行爲”에 대해서 法適用이 除外되므로 違反事件이 成立되지 않음(法第48條)

다. 一定한 組合의 行爲

- 다음의 要件을 갖추어 設立된 一定한 組合의 行爲에 대해서는 法適用이 除外되므로 그러한 組合이 事業者團體禁止規定의 競爭制限行爲를 하더라도 違反事件이 成立되지 않음.
- 一定한 組合의 要件
 - (가) 小規模의 事業者 또는 消費者의 相互扶助를 目的으로 할 것.
 - (나) 任意로 設立되고 組合員이 任意로 加入 또는 脫退할 수 있을 것.
 - (다) 各組合員이 平等한 議決權을 가질 것.
 - (라) 組合員에 대하여 利益分配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限度가 定款에 定하여져 있을 것.
- 例 外
 - 不公正去來行爲를 하도록 하거나 一定한 去

來分野의 競爭을 “實質적으로 制限함으로써 不當하게 價格을 引上하는 경우에는 違反事件이 成立함.

- 價格引上의 不當性與否의 判斷은 價格引上이 必要不可缺한 事由가 立證되지 않으면 不當한 價格引上이 됨.

라. 認可받은 共同行爲

- 一定한 去來分野의 利益을 實質적으로 制限하게 된다하더라도 許可를 받은 共同行爲는 違法事件이 成立되지 않음(法第11條 但書)
- 許可를 받을 수 있는 共同行爲의 類型 및 要件(法第11條 第1項 但書, 施行令 第19條 내지 第19條의 6)
- 共同行爲를 하려는 者는 共同行爲 認可要件에 該當되는 것을 立證할 수 있는 資料를 添附하여 認可申請을 하며, 認可申請된 共同行爲에 대해서는 公示등의 節次를 거쳐 認可與否가 決定됨(施行令 第17條 내지 第17條의 2)
- 事業者가 認可된 共同行爲의 實施狀況을 每6月마다 經濟企劃院長官에게 報告를 하여야 하며(施行令 第18條) 認可된 共同行爲의 程度를 넘어서 또는 認可內容을 違反할 때는 그 部分은 違反事件이 成立함.

마. 行政處分·行政指導에 의한 競爭制限 行爲

- 行政官廳의 行政處分이나 行政指導에 의하여 事業者間에 行해지는 共同行爲에 대해서도 原則으로는 違反事件으로 成立함.
- 競爭을 制限하는 行政處分이나 行政指導는 經濟企劃院長官의 事前協議가 있어야 함(法 第51條). 事前協議를 거친 行政處分이나 行政指導는 違反事件으로 成立되지 않음.
- 行政處分이나 行政指導에 의한 共同行爲가 事前協議를 거치지 않을 경우 原則으로는 違反事件이 成立하나 事業者의 共同意思에 의한 共同行爲가 아니라는 점에서 具體적인 경우에 個別적으로 違反事件 成立與否 및 處理를 判斷함.

Ⅲ.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

1. 競爭制限行爲의 定義

共同行爲의 類型(目的)	積極的 認可要件	消極的 認可要件
① 産業合理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共同行爲에 의한 技術向上, 品質改善, 原價節減 및 能率增進등의 效果가 明白한 경우 ○共同行爲 以外의 方法으로는 産業合理化의 達成이 困難한 경우 ○競争制限을 禁止하는 效果보다 産業合理化의 效果가 클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當該 共同行爲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程度를 超過하지 아니할 것 ○需要者 및 關聯事業者의 利益을 不當하게 侵害할 憂慮가 없을 것 ○當該 共同行爲 參加事業者間에 共同行爲의 內容에 不當한 差別이 없을 것.
② 不況克服	<ul style="list-style-type: none"> ○特定한 商品 또는 用役의 需要가 相當期間 계속하여 減少하고 需要에 比하여 供給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狀態가 계속될 것이 明白한 경우 ○當該 商品 또는 用役의 去來價格이 相當期間 平均 生産費를 下廻하고 있는 경우 ○當該 事業分野의 相當數의 企業이 不況으로 事業活動을 계속 하기가 困難하게 될 憂慮가 있는 경우 ○企業의 合理化에 의하여는 上記 事項을 克服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當該 共同行爲에 參加하거나 脫退하는 것을 不當하게 制限하지 않을 것.
③ 産業構造의 調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國內의 經濟與件의 變化로 特定 産業의 供給能力이 顯著하게 過剩狀態에 있거나, 生産施設·生産方法의 落後로 因하여 生産 能率이나 國際競争力이 顯著하게 低下되어 있는 경우 ○企業의 合理化에 의하여는 上記 事項을 克服할 수 없을 경우 ○競争制限을 禁止하는 效果보다 産業構造를 調整하는 效果가 클 경우 	
④ 中小企業의 競争力 向上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共同行爲에 의한 中小企業의 品質, 技術向上 등 生産性 向上이나 去來條件에 관한 交渉力 強化가 明白한 경우 ○參加事業者 모두가 中小企業者인 경우 	

共同行爲의 類型(目的)	積極的 認可要件	消極的 認可要件
	○共同行爲外的 方法으로는 大企業과의 效率的인 競爭이나 大企業에 對抗하기 어려운 경우	
⑤ 去來條件의 合理化	○去來條件의 合理化로 生産能率의 向上, 去來의 圓滑化 및 消費者의 便益增進에 明白하게 寄與하는 경우 ○去來條件의 合理化 內容이 當該 事業分野의 事業者들에 의하여 技術的·經濟的으로 可能한 경우 ○競爭制限을 禁止하는 效果보다 去來條件의 合理化의 效果가 클 경우	

-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는 “共同行爲 一定한 去來分野에서 事業者數의 制限, 構成事業者의 活動의 不當한 制限, 事業者에게 不公正去來行爲 再販賣價格維持行爲 등”의 禁止行爲를 事業者團體가 行함으로써 一定去來分野에 있어서의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狀態를 制限하는 것이 該當됨(法第18條 第1項)

가. 主 體

- 事業者團體가 競爭制限行爲의 主體임
- 事業者團體는 形態如何를 不問하고 2 以上의 事業者가 共同의 利益을 增進할 目的으로 組織한 結合體 또는 그 聯合體임.
- 事業者의 利益을 위한 行爲를 하는 任員, 從事員, 代理人, 其他의 者가 構成한 團體도 事業者團體로 봄.
- 事業者團體는 그 形態如何를 不問하고 社團, 財團, 組合, 其他 契約에 의한 둘 以上의 事業者의 結合體임.
- 團體의 目的이 “共同의 利益을 增進” 하는데 있는 團體에 한함.
共同의 利益이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活動에 限하지 않고 經濟活動上의 利益에 直接·間接으로 寄與함을 말하며 事業者個個의 具體的 利益은 물론 業界一般의 利益을 包含함.

- 團體의 目的은 그것이 定款·規約등에 明示된 目的에 拘碍받지 않고 實質的으로 判斷함.
- 聯合會와 같은 事業者團體의 聯合體인 事業者團體의 構成員은 構成組合뿐만 아니라 構成組合의 構成員도 包含함을 原則으로 함. 構成員의 範圍는 具體的 경우에 構成組合 으로 할 것인가 構成組合의 構成事業者に 擴大할 것인가는 組織의 原理와 法의 合目的性을 考慮하여 個別的으로 判斷함.

나. 意 思

-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에는 競爭制限行爲를 意思가 必要함.
- 競爭制限의 意思는 事業者團體의 總會·理事會·幹部會議·分科委員會등을 통한 決議, 決定등을 事業者團體의 意思로 보며 積極的, 明示的인 意思의 表示뿐만 아니라 競爭制限行爲의 結果 實現을 目的으로 하는 情報의 提供, 論議등도 包含함.
- 定款·規定 또는 施行中인 事業計劃書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競爭制限行爲의 경우에는는 定款·規定 또는 事業計劃書 自体를 意思로 볼 수 있음.
- 過去로부터 慣行으로 이루어지는 競爭制限行爲의 경우에는는 이를 禁止하는 事業者團體의 明白한 意思表示가 없는 경우에는는 競爭制限

行爲를 위한 意思가 存在하는 것으로 봄.

다. 行爲

-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는 事業者團體가 行하는 다음의 行爲를 말한다.

-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의 類型(法第18條 第1項)

(1) 共同行爲에 該當되는 行爲類型：“共同行爲 類型”參照

* 同行爲의 效力 및 認可節次 등은 共同行爲의 경우를 準用(法第18條 第2項)

(2) 一定한 去來分野에 있어서 現在 또는 將來의 事業者數를 制限하는 行爲

- 一定한 去來分野에 現在의 事業者數를 維持하고 現在의 事業者를 排除하여 그 數를 制限하고, 將來 新規事業者의 參加를 制限함으로써 結果的으로 市場에서의 競爭을 制限하는 行爲

- 競爭制限行爲에 該當하는 行爲例

- 一定한 去來分野에 新規事業者 參入 沮害
- 既存事業者를 排除하여 事業者數를 制限
- 事業者團體에의 不當한 加入制限

(3) 構成事業者의 事業內容 또는 活動을 不當하게 行爲

- 事業者團體가 構成事業者의 事業上의 設備, 制品, 價格, 技術, 數量, 去來方法, 營業方法 등의 事業活動에 關係 制限을 加하고,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沮害하는 것.

○ 이러한 制限이 “一定한 去來分野의 競爭을 實質的으로 制限하는 共同行爲”에 該當되면 事業者團體의 不當한 共同行爲에 該當함.

○ 事業者團體의 禁止行爲類型中 가는 抽象的 · 包括的(補完規程, 競合規程)

- 競爭制限行爲에 該當되는 行爲例

- 廣告活動의 制限
- 營業日, 營業時間의 制限
- 營業의 種類, 內容, 方法의 制限
- 構成員間에 去來先侵犯 禁止
- 店舖, 營業所의 新設, 移轉 制限
- 原材料의 獨占購入, 配分

(4) 事業者에게 不公正去來行爲, 再販價格維持行

爲를 하게 하는 行爲

- 不公正去來行爲를 하도록 事業者團體가 構成 事業者 및 다른 事業者에게 強制하거나, 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再販賣價格維持行爲를 하도록 함으로써 去來段階別로 市場價格을 制限함으로써 市場에서의 公正하고 自由로운 競爭을 制限하는 行爲

○ 不公正去來行爲：法 第15條 該當行爲

○ 再販行爲：法 第2條 第6項, 20條, 21條 該當行爲

- 行爲例

- 構成事業者 以外的 特定事業者와 去來치 않고 또는 去來치 않도록 事業者에게 要請
- 事業者로 하여금 都賣價, 小賣價를 定하도록 하는 行爲

2. 事業者團體의 設立申請 및 事業計劃書 提出

- 事業者團體의 競爭制限行爲를 效果的으로 감시하기 위해 事業者團體에 대해 그 設立申請 및 事業計劃書 提出義務가 賦課됨.

가. 設立申告

○ 事業者團體는 그 設立事項을 經濟企劃院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함(法第17條)

• 申告事項이 變更되거나 團體解散의 경우에도 申告하여야 함.

○ 申告期限：設立日로부터 30日以内

○ 申告內容：名稱, 定款 및 事業內容, 事業者團體의 所在地, 代表者와 任員의 住所, 姓名, 設立年月日 및 設立根據, 構成事業者者의 數, 法人의 登記簿謄本 또는 主務官廳의 團體登錄證寫本(施行令 第22條 第1項 第2項)

나. 事業計劃書 提出(施行令 第22條 第4項)

○ 提出期限：每會計年度 開始後 2月以内

○ 提出資料：事業計劃書, 기타 事業內容에 關한 資料

Ⅲ. 共同行爲 및 競爭制限行爲에 대한 制裁

1. 制裁手段

가. 私法的 制裁

- 不當한 共同行爲의 私法的 效果 否認
 - 不當한 共同行爲의 遂行을 約定하는 契約 등은 當事者間에 있어서는 이를 無效로 함 (法 第11條 第2項)
 - 認可 받은 共同行爲의 경우는 有效
 - 다만, 認可받지 않은 경우, 認可申請 하였을 뿐인 경우, 認可 받은 事業과 다른 경우 에는 無效
- 民事上 損害의 賠償
 -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不當한 共同行爲, 競爭制限行爲로 因해 被害를 입은 者에 대해 損害賠償의 責任을 짐 (法 第45條 第1項)
 - 다만, 損害賠償請求權은 是正措置가 確定된 後가 아니면 裁判上 主張할 수 없으며 請求權의 消滅時效는 1年임 (法 第46條)
 - * 損害賠償節次
違法行爲發生 → 是正措置 → 民事訴訟에 의한 被害者의 損害賠償 請求 → 損害賠償

나. 行政法的 制裁

- 共同行爲 및 競爭制限行爲에 대한 是正措置
 - 經濟企劃院長官은 不當한 共同行爲 및 競爭制限行爲를 한 事業者, 事業者團體에 대하여 當該行爲의 中止 기타 是正을 위한 必要한 措置를 命할 수 있음 (法 第13條, 第19條)
 - 是正措置를 命하는 方式
 - 是正命令
 - 是正勸告 (法 第41條)
 - 是正措置의 內容
 - 當該 契約, 合意등의 破棄
 - 該當行爲의 中止
 - 謝過廣告 掲載
 - 關聯者에게 書面通知
 - 其他 是正을 위해 必要한 措置

- 共同行爲에 대한 課徵金 賦課

- 經濟企劃院長官은 不當한 共同行爲가 있는 경우 當該事業者에 대하여 共同行爲의 實行期間동안의 賣出額에 100分의 1을 곱한 金額의 範圍內에서 課徵金을 賦果할 수 있음 (法 第14條)
- 課徵金은 是正措置와는 別個로 賦課할 수 있음.

다. 刑事法的 制裁

- 罰則限度

- 不當한 共同行爲를 한 事業者·事業者團體 : 2年以下의 懲役 또는 1億원以下의 罰金 (法 第55條 第1項 第7號)
- 懲役刑과 罰金刑은 併科可能
- 法 第18條 第1項 第2號 내지 第45號의 行爲를 한 事業者 團體 : 1年以下의 懲役 또는 7千萬元 以下의 罰金 (法 第56條 第3號)
- 是正措置에 不應한 경우 : 1年以下의 懲役 또는 7千萬元 以下의 罰金 (法 第56條 第3號)
- 設立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한 事業者團體등 : 5천만원 以下의 罰金

- 罰則賦課의 對象者

- 原則的으로 行爲者 (自然人)를 罰하는 外에
 - 法人의 代表者
 - 法人·個人의 代理人·使用人·기타 從業員
- 當該 法人 또는 個人을 罰함 (法 第59條, 兩罰規定)

- 告發權

- 共同行爲 또는 競爭制限行爲에 대한 罰則의 賦與는 經濟企劃院長官의 告發이 있어 야 함.
- 事業者團體의 設立未申告 및 虛僞申告등의 경우는 經濟企劃院長官의 告發이 없어도 論할 수 있음.